

	경기도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(RISE)구축·지원사업운영규정	규정번호	3-1-32
		제정일자	2025.06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RISE 사업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“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(RISE) 구축·지원 사업, RISE :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 (이하 ‘RISE 사업’이라 한다)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 이 규정은 경기도의 “경기도 GRAND-RISE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근거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RISE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본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제2장 RISE 위원회

제4조(RISE 위원회) ① RISE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심의·의결 기구로 RISE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RISE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내·외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내부위원은 본 대학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하며 사업추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제5조(RISE 위원회 기능) RISE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RISE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RISE 사업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RISE 사업비 집행 계획 심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의결사항
4. RISE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RISE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RISE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RISE 사업단

제7조(RISE 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RISE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직속기관으로 둔다.

② 사업단의 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은 대학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RISE 사업의 전략 수립, 단위과제 조정, 성과관리, 대내외 협력 등을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대학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사업단은 자체평가위원회, 성과평가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.

제8조(사업단장 역할 및 권한) 사업단장은 다음의 역할 및 권한을 가진다.

- ① 단위과제별 책임자 선정 및 변경 제청
- ② RISE 예산 편성 및 조정안 작성
- ③ RISE 성과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집 및 운영
- ④ RISE 위원회에 정기 보고 및 주요 안건 상정
- ⑤ 총장 및 대학본부에 사업성과 및 전략 방향 보고

제9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, 내·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
1. RISE 사업 계획평가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
2. RISE 사업비 운용 및 집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RISE 사업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제10조(성과평가위원회) ①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, 내·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RISE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
2. RISE 사업 환류 계획 및 전략 검토
3. 기타 RISE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장 재정

제11조(재정) ① RISE 사업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국고지원금 외 기초지자체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RISE 사업 국고지원금은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관리하며, 관계법령 및 교육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범위 내의 세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회계) RISE 사업 관리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

제13조(수당) 사업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전담(겸직) 교직원 및 사업 운영 구성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기타

제14조(세부지침) 기타 RISE 사업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